

司書教師의 地位向上을 위한 一研究

—그 必要性 認識의 次元에서—

李 春 澤*

目 次

- | | |
|--------------------------|-------------------|
| I. 緒 言 | III. 司書教師에 대한 諸問題 |
| II. 學校圖書館機能의 極大化 | 1. 司書教師의 定義 |
| 1.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 化 | 2. 司書教師에 대한 法的問題 |
| 2. 教科課程과의 連繫 | 3. 司書教師의 養成 |
| 3. 讀書指導의 強化 | |
| 4. 圖書館利用指導 | V. 結 論 |

I. 緒 言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이나 教育的 價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機會를 통하여 主張하여 왔다. 그러나 막상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이나 教育的 價值를 切實히 認識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現象을 단적으로 證明해 주는 具體的인 例가 現在의 學校圖書館 實情이며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專任司書教師의 數字이다.

圖書館學의 歷史는 실로 悠久하다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教育界에 現代의인 의미의 圖書館運動이 展開된 것은, 1956年 戰亂으로 沈滯되었던 圖書館界의 復興을 위해 피바디 師範大學의 教育使節團이 來韓하여 國內最初의 正規大學 學部圖書館學科를 延世大學校에 設置하고 附設機關으로 韓國圖書館學堂을 두어 高級司書 一年課程과 司書教師養成課程을 設置하여 專門職養成을 위한 教育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후 30年 이 땅의 圖書館界는 量的質的인 面에서 많은 發展을 하

* 公州師範大學 圖書館教育科 專任講師

2 도서관학논집

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大學圖書館의 發展은 刮目할만 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독 學校圖書館만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發展은 커녕 退潮를 免치 못하고 있는昨今의 現實은 안타깝기만 하다. 教育을 論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教育熱은 가위 世界第一이라는데 어찌하여 學敎의 心臟部요 教育의 中樞機關이라는 學校圖書館은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原因은 教育制度上의 問題點, 즉 表面上으로는 全人教育을 標榜하고 있지만 實제적으로는 劃一的인 教科書中心의 入試爲主敎育과 現行敎育法과 圖書館法등의 矛盾點으로 政策의 不在, 制度의 矛盾, 認識의 不足, 豐算의 영세성 등의 制度의 問題를 들 수 있다. 이 分野를 集中的으로 다룬 論文들이 多數發表되어 問題點들은 거의가 露呈되었고, 그에 따른 學校圖書館의 發展策이나 司書教師의 地位向上을 위한 改善策도 提示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與件이 改善될 조짐은 커녕 더욱 暗澹해지는 것은 現在의 入試爲主, 教科書爲主, 暗記爲主의 教育制度下에서는 現在와 같은 充分치도 못한 圖書資料爲主의 學校圖書館奉仕는 그 必要性을 認識받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學校圖書館이 教育의 場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본들 끼돌아오는 것은 空虛한 데아리 뿐 일 것이다. 그렇다고 學校圖書館을 이대로 放置해둘 수도 없고 제대로活性화시킬 수 있는 妙案이 있는 것도 아니니 至難한 現實이다.

本稿는 此際에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再檢討하여 그 機能을 轉換 내지는 極大化함으로써 現敎育制度와 圖書館을 連結시킬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해 보고 韓國의 司書教師의 役割 및 現實을 再照明하므로써 學校圖書館의 活性화는 물론 司書教師의 地位向上까지도 圖謀할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

II. 學校圖書館 機能의 極大化

우리의 學校圖書館界가 지금까지一般的으로 論해오던 學校圖書館의 目的 및 機能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가不斷히 追究해야 할 가장 理想의 인 目標요 機能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은 근 30년 동안 끊임없이 追究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해 온 目的대로 成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까운 將來에 어떤 制度가 마련될 기미도 없고 法的인 뒷받침이 될 展望도 보이지 않는다. 더더구나 學校圖書館을 發展시키기 위해 入試爲主의 教育이 改善되리라는 것은 難望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正確히 認識해야 될 것은 實現性이 없는 지나치게 理想의인 것을 추구해서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지난날의 우리를 反省해 보고 진실로 學校圖書館이 必要하다는 認識을 學校長이나 一線教育行政家들에게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逆으로 생각해보면 學教長이나 一線教育行政家들이 그만큼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切感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重要한 一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現時點에서 볼 때 學校圖書館의 機能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比較的 疏忽하게 취급되었으나 將來를 생각할 때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比較的 實現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機能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결코 學校圖書館의 本質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機能을 轉換 내지는 極大化시키는 것이다.

1.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化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데아 센터로의 轉換이다. 이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1963年 制定된 韓國의 圖書館法

4 도서관학논집

을 보면 第 3 條 3 項에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教員의 學習, 教養, 調査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¹⁾고 規定되어 있고 第 2 條 定義에서 “이 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必要한 資料 (이하‘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蒜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査, 研究, 學習, 教養, 레크레이션, 기타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²⁾고 規定하여 圖書館資料에 視聽覺資料를 包含시키고 있고, 또한 圖書館奉士의 重要한 貢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圖書館이 그러했던 것과 같아 學校圖書館도 圖書資料만을 蒜集하고 保存하고 利用하는 單純한 機能밖에 發揮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現代의 圖書館은 從來의 概念과는 달리 단순히 圖書資料만을 蒜集 保管하는 것이 아니라,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의 行政資料, 鄉土資料等 多樣한 資料를 包含하는 것을 그 構成要素로 하고 있다. 그것이 中·高等學校의 學生들을 상대로 直接的인 教育을 실시하는 學校圖書館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또한 美國의 경우는 더욱 빨라서 1920年 ALA에서 出版된 Standard Library Organization and Equipment for Secondary Schools에서 “圖書館은 視聽覺資料를 위하여 學校에서 使用되는 實제활동(실물활동), 이동 영사기, Slide 영사기, 그림, 지도, 지구의, 게시판, 박물관적 資料등 모든 資料를 위한 調整機關과 Center로서 奉士한다. 이 이러한 資料는 定期的으로 등록되고 目錄되어 圖書館에서부터 指示를 받고 이 응작임은 記錄된다.”고 Media Center의 概念에 대한 그들의

1) 圖書館法 第 3 條, 圖書館의 种類。

2) 圖書館法 第 2 條 定義。

指示를 豫言하고 있다.³⁾

美國의 學校圖書館 基準에 明示된 學校圖書館의 概念을 살펴보면 單純한 Material tool (道具) 에서 Material instruction (1920) 이 되고 instructional material (1945) 이 되며 Curriculum & Instructional Material Center (1960) 에서 Multimedia Center, Learning Resource Center (1969) 를 거쳐 A Creative Instructional Actuality로 变모되어 왔다.⁴⁾ 다시 말하여 Curriculum의 道具였던 學校圖書館의 概念은 하나의 現象的이고 被動的인 資料에서 벗어나 無限한 可能性을 内包하고 있는 活動的 教育計劃인 最新概念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명칭까지를 學校圖書館 (School Library) 이라 부르던 것을 學校圖書館 미디어 센터 (School Library Media Center) 라고 改稱⁵⁾ 하게 되었고 그 緣由는 多媒體資料 活用을 通하여 學習能率과 效果를 極大化시키기 위한 것으로 思料된다.

이와같이 媒體資料의 活用으로 學生들에게 學習動機를 부여하고 烏美를 誘發시킴으로써 結果的으로 學習能率과 學習效果를 增進시킨다고 할 때 媒體資料의 體系的 導入과 活用은 全體的인 教育의 質的向上을 가져올 것이다.⁶⁾

이러한 理由에서 美國이나 英國의 學校圖書館이 媒體資料를 漸進的으로 많이 所藏하고 活用시킴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學校圖書館의 奉仕體制를 多養하게 발전시켰고 그 機能을 伸張시켰던 것이다. 그 具體的인 例가

3) John T.Gillespie & Diana L.Spiro 共著, 金孝貞譯, “美國學校圖書館의 變革” — Media Center의 出現 — 金孝貞譯, 圖書館, V.36, n.2, 1981, pp.30-31.

4) 金孝貞等, 韓國의 圖書館發展을 위한 國家政策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 圖書館 學科 創立 20 週年 記念論文集, 1978. p.110.

5)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 化를 위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 大學院, 1983. p.11.

6) loc. cit.

6 도서관학논집

1977年에 美國의 司書教師協議會는 學校圖書館에 視聽覺資料를 備置할 것을 강조하였고, 學校圖書館을 學校圖書館 미디어 센타로 名稱까지 變更하였던 것이다.⁷⁾

日本의 경우도 이미 이러한 점을 認識하고 미디어 센타의 實現을 적극 要求하고 있다. 1976年 3月 16日 全國學校圖書館 協議會에서 文部省에 提出한 「敎育課程의 改定과 學校圖書館에 대하여」란 要請書를 보면 「個別化된 學習에 있어서는 自主的이고 自己提示的 (self-directive) 인 學習態度가 強調되어 兒童, 學生이 自由로이 參與하든가 作業을 進行해 가기 위한 教材나 資料가 豐富히 마련되어 있다. 歐美 諸國에서는 學校圖書館 (School Library) 이라는 用語는 어제의 것으로 化하고 오늘에는 미디어 센타 (Media Center) 라 일컬으는 背景에 立脚하고 있다. 卽 미디어 센타의 充實과 效果的인 運營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이러한 教育改革이 實을 거두고 있음에 着眼하여야 한다. …… 中略… 日本의 學校가 마치 上級學校에 入學하기 위하여 準備學校로써의 教育에 狂奮하고 있는 사이에 世界의 教育은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大變化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世界教育의 動向에 注目하면서 日本의 受驗테스트 萬能敎育에 참겨있는限 어쩔 수 없는 焦燥感은 解消되지 않을 것이다. …… 中略… 學校敎育의 問題가 國民自身의 問題로써 現代와 같이 強하게 認識되어지고 있는 時代는 없다. 不必要하다고까지 생각되는 羅列의 知識의 注入과 受驗 테스트 體制下에서 學生들은 自主的 學習意慾을喪失하고 劃一的인 思考傾向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⁸⁾ 고 指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圖書館法에 視聽覺資料의 包含을 規定하였고 學習指導法의 側面에서 본 金斗弘

7) ibid. p.21.

8)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編, “現代敎育과 學校圖書館, —「敎育課程의 改定과 學校圖書館」—, 李澤濟譯, 圖書館, V.19.n.2. 1978. pp.9-10.

教授의 研究가 있다. 그는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에서 光復後 우리의 教育界에 增기차게 學習指導法의 改善을 高唱하여 踏은 改善方案이 提示되었지만 現在까지 남아 있는 것은 視聽覺教育과 圖書館教育의 두가지 方法만이 남아 있다고前提하고 “우리의 學習指導法의 改善의 目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보다 많은 것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正確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學生들의 學習하는 能力 그 自體를 보다 次元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學習指導法의 改善의 目標 가운데 前者は 視聽覺教育의 方法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으며, 後者は 圖書館教育의 方法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視聽覺教育의 方法을 通하여 能率的 效果의in 傳達과 受容을 可能하게 하며, 圖書館教育의 方法을 通하여 自律學習을 助長하고 그로써 學習者에게 自力으로 學習할 수 있는 能力を 獲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쉽게 正確하게 가르칠 수 있는 視聽覺的 方法을 學習指導에 導入하는 것은 現代教育이 切實히 要求하는 바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것은 가르치는 것에는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限界내의 것 마저도 學習者가 全部 記憶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學習者가 將次 어떤 問題에 當面하였을 때 그 問題의 解決에 관연된 情報 (知識)를 能率的 效果의으로 檢索해내는 方法을 가르쳐주는 圖書館教育을 實施하게 되는 것은 必然的인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⁹⁾

그리고 圖協에서 發表되었던 韓國圖書館發展計劃 (草案)의 學校圖書館現況을 說明하는 가운데에서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일찍부터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案을 制定하여 이를 實行할 것을 提議하였으나 教育當局은 이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反面에 圖書館 機能의 一部分인 視聽覺

9) 金斗弘,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에 대한 考察”, 圖協月報, v.11. n.2. 1970. pp.2-3.

8 도서관학논집

資料센터의 設置를 各級學校에 권장하여 大部分의 學校에서 視聽覺資料室을 設置함으로써 結果的으로 圖書館의 機能을 弱化하는 경향으로까지 發展시켰다. 學校圖書館은 教育資料의 매개센터이다. 教育資料가 冊子型一邊度였던 時代는 떨써 오래전에 사라졌다. 教育資料는 人間이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視聽覺資料가 圖書館의 重要한 資料임은 現代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常識化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視聽覺資料室을 圖書館과 별도로 設置運營하는 것은 전혀 意味가 없는 일인 것이다.”¹⁰⁾라고 視聽覺資料室이 圖書館과는 無關하게 設置되어 運營되는 것이 오히려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弱化시켰으며 視聽覺室의 別途運營은 전연 意味가 없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最近의 研究로는 公州師大 金容喆教授의 “學敎圖書館의 Media Center化를 위한 研究”를 들 수 있다. 金教授는 沈滯된 學校圖書館의 活性化를 위해서 學校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을 밝히고 機能面으로 본 學校圖書館 Media Center의 與件과 改革해야 할 學校圖書館 Media Center의 計劃을 주로하여 Media Center에 대한 것을 極明하게 밝히고 Media Center를 活性化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提示 하였다. “教授 - 學習에 必要한 모든 教育媒體資料를 한데 統合하여 運營함으로써 資料의 分散에 따라 時間, 費用, 人力등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現在 非專門職教師에게 視聽覺 機教材를 담당케하여 각 종 教育資料의 製作과 機教材의 活用에 非能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專門職 司書教師에게 利用, 管理, 運營을 담당케 함으로써 그 效用性과 能率을 極大化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前提하고 “結論的으로 本稿가 意圖하는 것은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化에 대한 制度的 實現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現在 學校施設 設備基準令(대통령령 4398)에 의해서 全國의 各 中高等學校에 各種 視聽覺機教材가 이미 備置되어 있으므로 現在 學校長 재량에 따라 별도로 運營, 管理하고 있는 이들 視

1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發展計劃”(草案). 圖協月報, v.20, n.7, 1979, p.8.

聽覺資料들을 學校圖書館에 統合하여 運營하도록 行政的 措置를 취한다면 모든 教育媒體資料 (Educational Media) 的 運營시스템이 一元化되어 결국 Media Center의 制度的 裝置가 마련될 수 있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¹¹⁾ 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즉 現在의 學校圖書館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唯一한 代案은 Media Center로의 機能轉換 내지는 機能極大化 뿐이라는 것이다.

參考로 現在 中·高等學校의 視聽覺機材 備置現況을 보면 表표와 같다.

2. 教科課程과의 連繫

學校圖書館이 活性化되지 못하는 또하나의 主要한 原因으로는 學校圖書館이 學校의 教育課程에 깊숙히 關與하고 있지 关하다는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도 部分的으로나마 數次에 걸쳐서 指摘되어온 사실이다.

敎育學者인 Douglas 女史는 “學校圖書館은 教育課程展開에 寄與함과 동시에 學生들의敎養과 興味形成을 돋는 支援奉士機館이며 當面 問題解決를 위하여 圖書館을 有效하게 活用하는 方法을 習得시키고 讀書指導에 의해 生活化된 讀書習慣을 形成하게 하여 圖書館의 利用을 통하여 社會的 民主的 生活態度를 習得케하는 積極的이고 活動的인 教育機能을 가지고 있는 教育機關이다.”라고 하여 學校圖書館이 教科課程 展開에 寄與하는 教育機能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奉士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缺陷은, 教育課程의 展開와 圖書館資料가 意圖의으로 連結되어 있지 않다는 點이다. 이 缺陷은 上級學校에 이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學校의 모든 教育計劃이나 活動 圖書館資料와 連結되어 있지 않다면 그 學校 圖書館은 舊時代의 遺物에 지나지 않는다.

敎科活動은 勿論, 클럽活動이나 行事등의 特別活動에 이르기까지 그 計

11) 金容晶,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 化를 위한 研究”, 1985年 韓國圖書館學會發展資料, p.2.

[별표 1] 중학교 시청각기자회비 천황 (1984년 말) ②)

구 분	학 교 수	시				청				각				기				체			
		영		사 기		슬 라 이 드		투 시 품 등 기		실 품 환 등 기		영 사 소		크 린							
		8 기 준	8 확 보	16 기 준	16 확 보	기 준	확 보	기 준	확 보	기 준	확 보	기 준	확 보	기 준	확 보	기 준	확 보				
국 험	8	권 장	-	8	4	14	7	14	9	권 장	2	22	11								
공 험	1,579	"	183	1,940	647	2,985	2,344	2,988	1,955	"	398	4,168	2,331								
사 험	738	"	120	899	439	1,515	1,114	1,430	838	"	194	1,954	1,135								
체	2,325		303	2,847	1,090	4,514	3,465	4,432	2,842	"	594	6,144	3,477								
학 보 율					38.2		76.7		64.1				56.5								

구 분	학 교 수	시				청				각				기				체			
		영 음 기		무 떡		무 콩		무 밀		무 기		사 진 기		밀 푸		C. C TV		영 흐 률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기준	확 보				
국 험		8	38	권 장	2	권 장	-	8	5	권 장	1	권 장	-								
공 험		2,089	5,791	"	260	"	61	1,599	1,550	"	113	"	51								
사 험		962	2,488	"	70	"	24	729	636	"	150	"	87								
체		3,009	8,317		332		85	2,336	2,191		264		138								
학 보 율			276.6									93.7									

〔별표2〕 고등학교 사장자기자비처 협회 (1984년 말)

구 분	학교수	시 청 각 기 계					
		영 시		승 차		이 등 기	
		기 준	학 보	기 준	학 보	기 준	학 보
		8 <small>회</small>	16 <small>회</small>				
국 립	14	권 장	3	20	12	33	24
공 립	755	"	148	935	336	1,487	1,217
사 립	780	"	196	1,085	625	1,822	1,389
체	1,549		347	2,040	973	3,342	2,639
학 보	율				47.6	78.9	67.7
							64.3

구 분	학교수	시 청 각 기 계					
		영 시		현 미		기 준	
		기 준	학 보	기 준	학 보	기 준	학 보
		누 음 기	무 박 소 코 립	현 미	기 준	기 준	기 준
국 립		20	63	권 장	1	권 장	4
공 립	998	2,535	"	105	"	93	756
사 립		1,190	3,022	"	68	"	104
체		2,208	5,620		174		201
학 보	율						1,491
							587
							97.4
							518
							217

劃段階와 展開段階에 있어서 圖書館資料가 活潑하게 利用될 때 비로소 그 學校圖書館은 살아 있는 것이다.”¹³⁾ “심각한 問題는 韓國의 學校圖書館은 學校教育의 目的達成에 있어서 그 方法이나 理念이 具體的으로 貢獻함이 적다는 사실이다. 즉 學校教育의 中心的 施設로써 그 存在가 뚜렷이 부각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注視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나름대로 教師나 學生의 공부나 數科運營에 어느정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圖書館活動으로 滿足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 學校圖書館은 아직도 그 本然의 位置를 차지하고 그 教育的 使明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學校圖書館의 虛點으로 因하여 政府나 學校當局에서 學校 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投資를 꺼리고 있다.

學校圖書館이 學校教育의 底邊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는 한 아무리 圖書館의 施設이 좋고 有能한 司書教師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學校 裝飾品에 지나지 않는다. 學校圖書館의 存在理由는 그 學校의 教育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는 有機物인 運營體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모든 教育活動 즉 教育目的과 잘 調和되고 一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學校圖書館이 學校의 外廊에 차리잡은 마치 雜誌의 附錄과 같은 存在로써 새로운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價值를 認識하지 못할 때 學校圖書館의 活性化는 期待하기 어렵다.

學校圖書館은 學校全體에 開放되어 모든 教育活動에 直結되어 利用하는 學習教材와 學習情報의 센터로서 存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學習指導와 分離되어 放課後에 自意에 의하여 利用하고 利用시키는 圖書館에서 脫皮하고 教育活動의 中心機關으로서 外廊으로부터 中心點에 位置하

13) 金斗弘, “學校圖書館의 實態와 問題點”, 圖書館, 1966. 4. p.6.

14) 김세익, “한국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트”, —학교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서관, v.26. n.9. pp.4-5.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實踐的 解決이 必要한 것이다.¹⁵⁾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學校圖書館의 專門職 司書教師는 教育課程 委員會에 參席하여 그의 運營 發展에 대하여 充分히 意思를 開進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專門職 司書教師의 가장 重要한 任務의 하나는 自己所屬學校의 教育目的을 充分히 理解하고 目的達成을 위해서 支援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學校圖書館 미디어 센터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積極的인 奉仕를 하기 위해서도 教師의 授業目標와 教室에서의 活動등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相互 連結機能들이 다른 教師들로 하여금 全體教育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長期計劃을 세우는데 必要한 提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專門職 司書教師는 學生과 教師를 위해서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案内를 하고 多樣한 媒體資料의 利用을 통하여 知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¹⁶⁾ 學生들의 興味와 關心을 主要視하고 能力과 適性을 파악하여 自主的이고 自發的인 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學校圖書館이 必要하게 되며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 必須的으로 要求되는 것은 司書教師의 學校教育課程에 대한 深度 있는 理解이다. 이 점에 대해서 日本에서는 圖書館法 改定案에서 司書教師의 발령에 관해서 「司書教師는 教師로서의 상당한 經驗과 司書教師의 資格을 가지 教師를 配置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상당한 經驗에서는 「教師로서 양호한 成績으로 6年 以上 現무한 자」¹⁷⁾로 顧慮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司書教師의 職務의 重要性을 顧慮한 主張이다. 學校의 全 教育課程을 통해

15) 金京一, “學校圖書館의 發展策”, 國會圖書館報, v.14. n.4. 1977. pp.17-18

16)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 化를 위한研究”, op.cit.p.39.

17)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學校圖書館法改正, その課題と展望,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3. p.124.

서 본다면 그 編成이나 展開에 寄與하기 위해서는 教師로서의 상당한 經驗이 전혀 없는 초보자가 教育內容에 관한 學敎圖書館의 運營 計劃을 立案하기도 하고, 利用指導 讀書指導에 대하여 教員을 원조하기도 하고 더구나 教員의 照會나 相談에 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勿論 司書教師의 발령에 관한 規定으로 어디까지나 司書教師가 學校教育의 内容과 方法을 충분히 理解하고 學生과 資料를 적절히 連結시켜 주는 能力を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顧慮한 規定이겠지만 現實的으로 이러한 것이 可能할 것인가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아울든 司書教師에게 學校教育課程에 대한 深度 있는 理解가 必要하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點의 解決方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讀書指導의 強化

學校圖書館의 業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重要的 業務는 讀書教育이다. 一常的인 圖書館利用은 어떠한 意味에서는 有形無形의 指導下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指導의 樣態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첫째는, 問題解決을 위한 調査研究로써 教科學習을 위해서 問題를 解決하도록 하는 利用指導이며, 둘째는 人間으로서의 自己 人格形成을 위한 教養讀書를 하도록 指導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教養讀書는 充實한 計劃下에 각者 自己의 能力에 맞게 段階的으로 그리고 效果的으로 教養을 얻을 수 있도록 指導해야 한다.¹⁸⁾

感受性이 가장 敏感한 青少年期의 學生들에게 가장 알맞는 圖書를 選定하여 그들에게 提供해 주고 效果的이고 能率的인 讀書方法을 가르쳐주어 을바른 讀書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8) 鄭駿謨, 文獻情報原論, 改訂版,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83, p.79.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와같이 좋은 讀書習慣을 붙여 놓으면 學校를 卒業한 후에도 계속해서 實務나 教養에 關係되는 圖書를 읽어 나감으로써 품임없이 自我發展을 圖謀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自律學習을 통하여 自己發展을 圖謀하는 것이 平生教育의 基礎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이 發展하지 못한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理由를 든다면 教育制度上의 問題點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表面上으로는 全人教育, 個性尊重教育, 創意力 開發을 위한 藝育, 探究學習의 伸張, 教師中心의 法入式 方法의 止揚등 훌륭한 教育目標를 내세우고 있지만 實제로의 千篇一律的인 教科書中心의 入試爲主의 教育을 하게 되어 學生들은 때부분 教科書 以外의 教養圖書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中·高等學校를 卒業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장 感受性이 銳敏하고 人格形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青少年期에 哲學, 宗教, 思想, 文學, 歷史등에 관한 教養圖書를 폭넓게 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學生들은 情緒的으로 베마르고 각박한 人間性을 醇化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원만한 人格을 形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요즈음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青少年問題와도 無關하지 않을 듯 싶다.

敎育은 반드시 教師나 教授의 講義를 받아야만 되다는 固定觀念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文獻이나 媒體資料들을 探索해서 問題를 解決하고 教養과 知識을 쌓아가는 習慣을 기르는 것이 바른 自我發展을 開媒하는 질이요 또한 平生敎育의 기틀을 마련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自發的 研究와 知識探究의 態度는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敎, 大學의 圖書館에 소장된 文獻이나 媒體資料 利用에 대한 習慣을 붙여 讀書나 資料 利用法을 生活化하는 것이 그 捷徑이 될 것이다.¹⁹⁾ 이러한 問題들은 日本에서도 오래전부터

19)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化를 위한研究”, op.cit. pp.30-32

계속적으로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하는 學生들에게 代價의으로 주어지는 테레비죤을 中心으로 하는 巨大한 매스코뮤니케이션文化가 가세하여 그의 影響을 받고 있는 學生들은 問題에 受動的이고 感覺的이며 劃一的인 思考型의 學生들이 出現하고 讀書力과 讀書體驗의 後退라는 傾向이 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生覺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매스코뮤니케이션의 退廢라는 問題와 더불어 그 것에 대한 批判的인 處理能力의 育成과 積極的인 讀書指導나 映像教育에 의한 個性的인 人間性, 豐富한 感性의 回復에 努力を 增強하고 重視하는 指導를 圖謀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現在와 같은 學校教育의 狀態로 좋은가 라는 疑問과 함께 그 속에서도 讀書가 如前히 自己教育의 方向이며 特히 青少年期에 있어서의 人格形成이나 思想, 삶의 發見에 重要한 教育的 作用을 하게 될 것이라는着眼하여 그것을 如前히 教育속에 받아들이고 位置를 確固히 해야 될 것이라는 問題를 진지한 態度로 再考해야 할 것이다.

現在야말로 自主的인 學習能力의 育成을 통하여 創造的인 人間을 形成하는 것을 重要한 教育目標로 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學校圖書館이 가지 教育的 意義와 그 機能의 重要性을 새삼스럽게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²¹⁾

이와 같이 重要한 學校圖書館機能中의 하나인 讀書指導역시 그 理由야 어디있든 극히一部分을 除外하고는 소홀히 취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學校教育의 또 하나의 重要한 要素인 讀書指導에 대하여서도 重要한 한 教育課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無視되고 있다. 한때는 서울시 教委가 讀書勤獎運動을 展開하도록 유도하여 주요 學校에서 讀書敎育을 施行한 적도 있었으나 담당 장학사나 指導敎

20)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編, “現代敎育과 學校圖書館”, op.cit. p.10.

21) loc. cit.

師가 전출되면 이러한 運動은 흔적도 없이 消滅되곤 한다. 結論的으로 韓國의 學校圖書館은 政策의 不在, 制度의 矛盾, 認識의 不足, 豫算의 영 세성등 問題點의 전시장과 같은 現況을 나타내고 있다.²²⁾ 는 韓國圖書館 發展計劃(草案)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도 近年(1978年)에 서울 特別市 教育委員會로부터의 讀書指導에 관한 指針書가 示達되어 特別活動時間이나 學級會時間 혹은 기타 時間에서 週當 1時間씩을 正規時間에 讀書指導時間으로 할양하라는 指示와 더불어 讀書指導는 一部地域에서나마 活氣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울 特別市 教育研究院에서 發行하는 “首都教育”에서도 讀書에 대한 特輯을 發行하고, 서울 特別市 教育委員會의 讀書指導에 대한 公文書만도 1978年度에는 무려 20餘件에 가까우며 그 중에는 예전에 없었던 讀書指導에 대한 特別講座와 讀書指導를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各市立圖書館이 各級學校圖書館을 支援하도록 指示하였고, 또한 서울 特別市 教育研究院의 研究教師制度를 從前에는 한번도 없었던 讀書指導分科를 따로 設定하여 讀書指導研究教師를 둔 점은 우리나라 教育史上 特異할 만한 記錄으로 남을 것이다.”²³⁾ 1980年代로 접어들면서 文教部에서는 ‘學敎讀書生活化 推進方案’의 參考資料를 示達한 것을 起點으로 讀書敎育은 우리나라 學校敎育의 轉換點이 되면서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讀書指導가 한 몫을 크게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教育委員會의 意慾的인 讀書指導는 생각했던 만큼 實效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것은 發想은 좋았지만 事務分掌面이나 運營面에서의 問題點, 理論的 根據가 부족한 讀書 그 自體에 대한 問題點등 事前의 準備가 철저히 行해지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 즉 막상 一線學校에서 讀書指導를 實施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指導할 것이며 그 指導教師

22)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發展計劃”(草案), op. cit. p.8.

23) 李正熙, “學校圖書館機能의 轉換期”, 圖協月報, v.19, n.10, 1978, p.9.

는 어떤 知識에 關한 素養을 갖춘 사람이 담당해야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누가 어떤 内容을 가지고 무슨 時間에 어떤 方法으로指導하는 것이 옳바른, 아니 國家가 바라는 讀書指導가 될 것인가 하는 問題였다.²⁴⁾ 이러한 計劃은 預前에 철저히 準備하여 正確한 教育課程의 모델을 作成한 연후에 專門的인 教育을 받은 司書教師를 먼저 配置하고 段階的으로 시범적인 教育을 實施하는 것으로부터 始作했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는 또 한 번의 좋은 機會를 맡고 있다. 今年부터 實施되는 大入論述考査는 讀書教育을 위한 好機가 될 것이다. 論理가 整然하고 精選된 文章을 구사하기 위한 必須條件으로 讀書量이 問題가 된다는 것은 不問可知의 事實이며 이러한 讀書라는 것이 一朝一夕에 해낼 수 없다는 것 또한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平素에 專門的인 教育을 받은 훌륭한 教師로부터 指導를 받으면서 오랜 시일 꾸준히 實施해야 만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學校圖書館에서 司書教師로부터의 讀書指導에 대한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學校圖書館이 安逸한 생각으로 既存의 機能만을 固守하여 讀書指導教師를 따로 獨立시키든지 아니면 國語教師나 教育學을 專攻한 教師에게 그 機能이 委任된다면 學校圖書館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讀書指導의 概念마저도 빼앗기고 學校圖書館은 그야말로 資料保存室이라는 機能의 初期段階로 退步 내지는 轉落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附言해 둘 것은 教師는 어차피 固有教科目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 중 比較的 實現성이 있으며 가장 所望스러운 것은 讀書指導라는 科目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與件이 갖추어질 때 讀書指導를 司書教師의 固有教科目으로 하는데 最善의 努力を 기울여야 할 것이다.

24) 李正熙, “學校圖書館機能의 轉換期와 그 對策”, 文教行政, 1982. 8. p.118.

4. 圖書館利用指導

學校圖書館은 學生들에게 情報資料와 圖書館을 利用하는 方法을 指導하는 것이 重要한 機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學生이 進學하여 上級學校의 圖書館과 그 資料를 利用하는 方法과 基本的인 姿勢를 育成하는 것이며, 또는 社會人이 되어서는 公共圖書館과 資料의 利用, 職業人이 되어서는 專門圖書館과 資料의 利用, 또는 全生涯의 讀書의 習慣을 몸에 익히는 것이 된다.²⁵⁾

아무리 훌륭한 資料에 아무리 훌륭한 施設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資料와 施設이 제대로 利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無用之物이다.

또한 現代教育의 中心課題는 學習指導法의 改善에 있고 學習指導法의 改善의 目標는 自律學習에 있으며 圖書館의 最高目標는 自主自律學習의 能力과 習慣을 涵養하는데 있다.²⁶⁾

自主自律學習에 대한 能力의 伸張과 習慣의 涵養은 單純히 圖書館의 門을 열어 두었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計劃的이며 持續的인 圖書館教育을 實施해야 한다.

그러므로 圖書館利用指導에 대한 教育이야말로 自己向上의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圖書館을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技能과 習慣을 伸張시켜 주는 일이며 他圖書館에 대해서는 훌륭한 利用者로 만드는 것이다. 이指導가 없이는 學生들로 하여금 一生동안 學習하는 方法을 捻得시킬 수 없으며 他圖書館의 利用問題까지를 決定지우는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圖書館이 使命感을 가지고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目的達成을 위해 初·中·高等學校를 考慮한 全國的 標準의 圖書館 教育課程表를 作成하여 計劃的이고 體系的인 教育을 實施해야 할 것이다.

美國이나 日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려 ‘高

25) 鄭鈞謨, 文獻情報學原論, 改訂版, op. cit. p.79.

26) 李珪範, “學校圖書館 運動의 現在와 進路”, 圖協月報, v.7. n.6. 1966.

等學校의 圖書館, ‘學校圖書館 利用 方法²⁷⁾ 등이 小冊子로 發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教育方法이 問題가 되기는 하지만 大은 時間을 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固有教科目이 없는 現實情으로서는 이미 部分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讀書指導時間은 약간 割愛하여 實施하든가 特別活動時間 등을 통한다면 可能할 것이다.

III. 司書教師에 대한 諸問題

1. 司書教師의 定義

司書教師의 定義를 論하자면 먼저 司書教師라는 用語가 갖는 概念부터 究明하는것이 順序일 듯 싶다.

學校圖書館에서 勤務할 수 있는 職員의 類型을 보면 司書教師, 圖書館擔當教師, 司書(學校司書), 事務員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중 우선 司書教師는 그 用語自體가 Teacher-Librarian이라는 輸入用語의 翻譯語란 점이다. 用語의 發想地인 歐美에서 過去에 使用되었거나 현재 使用되고 있는 概念을 보면, 첫째는 ALA의 圖書館用語集에 規定한 定義를 들 수 있겠다. “司書教師란 教師로써 그리고 司書로써 모두 奉仕할 수 있도록 訓練된 사람”²⁸⁾이라고 規定하였다. 여기서 感知할 수 있는 것은 教師와 司書로써 두가지 役割을 다 할 수 있도록 訓練된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教師를 앞에 놓음으로써, Teacher - librarian이 Teacher 와 librarian의 複合語로써 司書로서의 教師보다는 教師로서의 司書의 面을 上位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최근에 出版된 Harrod의 圖書館用語集에서도 司書教師란 “學

27) 東京都高等學校圖書館研究會編, 高等學校の圖書館, 七版, 月本書院, 昭和45年,
小學校圖書館利用指導研究會編, 學習と讀書のガイドブック—學校圖書館の利用の
しかた—, 第一法規, 昭和46年。

28) ALA,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 p.139.

校司書를 兼한 教師”²⁹⁾라고 規定하여 역시 司書的인面貌다는 教師的인面貌을 더 強調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植村長二部編「圖書館學・書誌學辭典」에서 司書教師란 “學校圖書館에 있으면서 教育科目을 擔當하고 또한 圖書館業務를 맡고 있는 職員”³⁰⁾이라고 定義하여 教育科目 擔當을 明示함으로써 教師의 인側面을 더욱 明確히 밝히고 있다.

다시 이 用語의 概念形成過程을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Mary Alice Lohrer 教授는 “이 用語를 初期에 使用하였을 때의 定義는 個個의 사람들이 한 일의 形式을 中心으로 하였지만 後에는 이 用語가 일의 形式을 代表할 뿐만 아니라 各者가 받은 教育의 量과 種類 및 그 사람이 圖書館業務에 從事한 學校의 크기에도 關係가 있었다. 學校圖書館의 發展과 더불어 教師中에서 몇 사람은 圖書館에 關한 教育을 받았으며 圖書館에 대하여 興味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圖書館奉仕를 뜻하는 意圖에서의 術語의 概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二重의 責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Teacher - librarian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實際에 있어서 最初의 圖書 (school - librarian) 였던 것이다.”³¹⁾ 이 글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Teacher - librarian이라는 用語의 合成과 合成過程이다. 즉 圖書館이 發展하면서 몇몇 關心있는 教師들이 圖書館에 關한 教育을 받았고 圖書館에 興味를 가지게 됨으로써 圖書館奉仕를 하게 되었고 教師가 圖書館奉仕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뒤 1918年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과 ALA에서 公

29) Harrod, Leonard Montague. Harrod's Librarian's Glossary 5th ed. Gower, Agrafton Book, 1984. p.766.

30) 植村長三郎編著, 圖書館學書誌學辭典, 東京, 1972. p.194.

31—35) Lohrer, Mary Alice. Teacher-librarian Training Program 1900-1944. (金京一, “司書教師의 專門性”, 圖協月報, v.6. n.10. 1965에서 再引用)

인한 特別基準인 C.C.Certain 基準을 보면 “이 司書教師라는 用語는高等學校의 教師로써 그 教師가 하지 않으면 안 될 授業의 一部를 輕減하여 學校圖書館을 擔當케 함을 意味한다.”³²⁾ 고 하여 教師로서의 司書役割에 대한 概念規定을 더욱 極明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20年에 Elizabeth Madison女史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業務를 基礎로하여 C.C.Certain基準의 定義와는 약간 다른 解釋을 發表하였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基準의 定義를 重視한다고는 생각치 않으나, 司書教師는 그것보다도 더 넓고 보다 專門的이며 보다 理想的인 範疇에 속한다. 司書教師는 中學校, 大學 師範學校, 或은 國民學校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다른 圖書館職員에 대하여 圖書館에 關한 授業과 圖書館運營에 關하여 가리키는 사람이다. 司書教師를 教育者로 定義하는 것은 當然之事이다. 司書教師는 먼저 教育者로서의 教授能力을 가져야 하고 同時에 热意가 있어야 한다. 第二의 要件으로서는 圖書와 圖書館의 利用에 關한 技術的인 知識을 教示하는 것이다.”³³⁾ 이 定義는 司書教師의 範疇를 더욱 넓히고 있으나 教育者로써 教授能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重視한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이며 圖書와 圖書館의 利用에 關한 技術的인 知識을 教示하는 것을 第二의 要件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Mary C. Richardson은 “司書教師란 1日 1時間 萬一 可能하다면 半日만을 教科擔當教師와 學生을 위하여 司書로써 奉仕하는 教師를 말하여 學校司書란 普通 1日의 全時間은 司書로써 教師와 學生에게 奉仕하는 教師를 말한다.”³⁴⁾ 고 定義하여 이때 비로소 司書教師와는 다른 學校司書의 概念을 밝혔고 司書教師는 역시 教師로서의 任務가 더 重합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Helen A. Canser의 글의 參考해 보면 “司書教師라는 말은 教室의 授業 및 學校圖書館의 職務의 두가지 種類에 從事하는

者를 任命하는데 使用하는 것이다. 어떤 學校에서는 圖書館의 管理와 事務의 責任을 擔當하고 일하는 教師를 말하고 또 어떤 學校에서는 重要한 指定된 것을 가리키는 學校司書를 말한다. 이중에서 어느것인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時間을 割愛하게 하는 것이니 그 割愛하는 時間의 比重 그것으로서 決定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學校도 完全한 奉仕를 갖출때 까지는 司書教師의 配置運動을 中止하지 않을 것이다. 司書教師의 定義를 變化시킨다든가 修正하는 것은 司書教師가 圖書館과 教室에서 지나는 時間의 量에 依한 것이며 또 이 두가지의 計劃을 다하기 為하여 어느 程度의 特別敎育을 修了하였는가, 그 量에 依한 것이다.”³⁵⁾ 이 定義의 첫 部分은 ALA의 그 것과 흡사하다. 재미있는 것은 司書教師와 學校司書를 特別히 區分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맡는 時間의 比重에 따라서 司書教師가 學校司書도 될 수 있고 學校司書가 司書教師도 될 수 있다고 하여 質的인 面을 더욱 強調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ALA 用語集은 學校司書란 “專門的으로 訓練된 學校圖書館 擔當의 司書”³⁶⁾ 라고 教室에서의 授業과는 無關하게 오직 學校圖書館만을 擔當하도록 專門的으로 訓練된 司書임을 밝히고 있다.

以上과 같이 各人 또는 各機關의 司書教師에 대한 定義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은 이 用語의 原產地인 美國에서 司書教師의 概念이 教師的인 側面보다 圖書館의 側面이 強調된 적이 적어도 概念上으로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上記한 바와 같이 美國의 學校圖書館研究家들은 하나같이 司書教師의 司書的인 面보다는 教師的인 面을 強調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司書教師란 教師資格證과 司書資格證을 兼備하고 教師로써의 任務인 授業

36) ALA .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op.cit.p.120.

24 도서관학논집

을 擔當하면서 圖書館의 專門的인 業務를 管掌하는 사람이다. 教師의 任務가 學生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때 司書教師가 授業을 擔當하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이와같은 教師의 概念으로 부터 出發한 司書教師는 現在에 와서는 學校圖書館이 圖書館 Media Center로 轉換됨에 따라 Teacher-librarian이라는 用語는 Media Specialist로 그 概念이 變하고 최근 發行된 ALA의 圖書館用語集에서 조차 그 用語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1966年 韓國圖書館協會가 쳐낸 圖書館用語集에는 司書教師 (Teacher-librarian)는 “教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진 者로써 學校圖書館을 管理, 運營하는 學校圖書館의 職員”³⁷⁾이라고 規定하고 學校司書 (school-librarian)라는 用語는 收錄조차 하지 않고 있어, 司書教師는 가르칠 科目이 없는 別無所用인 教師資格證만을 가졌을 뿐이지 그 實際 業務的인 面에서는 學校司書와 全然 다를바 없어 形式上만 司書教師이지 實際的으로는 學校圖書館을 管理, 運營하는 學校圖書館의 職員으로써 教師의 待遇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司書教師가 司書教師가 出發點에서 誤謬를 범한것이 오늘날 學校圖書館이 沈滯의 높에서 해어나질 못하고 司書教師가 제대로 待遇를 받지 못하는 큰 原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 司書教師에 대한 法的問題

司書教師와 關係된 法으로는 우선 圖書館法과 同法施行令을 들 수 있고 教育法, 教育法施行令, 教育公務員任用令, 教員資格檢定令施行規則, 教育公務員報酬規程등에 分散 規定되어 있다. 諸法中 關聯法條文을 檢討하

37)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p.61.

기 전에 附言해 둘것은 司書教師의 法的地位를 保障해야하는 司書教師關係法令이 有感스럽게도 하나같이 法制定 당시부터 問題點을 内包하고 있어 司書教師의 法的地位를 保障하기는 커녕 오히려 地位를 下落시키고 進路를 가로막고 있는 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까지 校圖書館이나 司書教師를 論할때는 끊임없이 問題點이 提起되었고 改正의 必要性을 力說하여 왔다. 따라서 發表된 論文數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훌륭한 司書教師가 없이는 校圖書館이 發展될 수 없고, 法的保障이 없이는 有能한 司書教師를 誘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痛感하고 冷徹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力說이 近 30 年 동안이나 持續되었지만 結果的으로 볼때 改善된 점이라고는 거의 없고 현재도 별로 好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法條文과 그에 따라 提起되고 있는 問題點을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司書教師의 資格基準

教育法 第 79 條 (敎員의 種別과 資格) 第 1 項 [別表 1] 은 司書教師가 될 수 있는 資格을 明示하고 있다.

[別表 1] 司書教師의 資格基準³⁸⁾

資 格	學 校 別	中 等 學 校	國 民 學 校	特 殊 學 校	幼 稚 園
司 書 教 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過程을 履修한 者 2. 準教師以上의 資格證 所持者로서 所定의 司書養成講習을 받은 者 3.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司書敎育過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38) 教育法 (1949. 12. 31 制定, 1984. 8. 2 改定), 第 79 條 第 1 項 [別表 1].

이러한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은 教員資格檢定令 第 20 條 (教職過程)³⁹⁾와 教員資格檢定令施行規則 第 12 條, 13 條⁴⁰⁾와 連繫되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内包하고 있다.

첫째는, 國民學校와 中學校·高等學校 司書教師 사이에 資格區分이 없다는 點이다. 즉 司書教師資格證만 가지면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어디든 勤務할 수 있다는 解釋이다. 다시 말해 國民學校의 教師도 司書教師資務證만 취득하게 되면 中等學校에 勤務한다 해도 최소한 法規上 으로는 下者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司書教師가 養護教師등과 같이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해 昇進의機會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司書教師는 現行法規上 一般教師의 資格과 司書教師의 資格을 함께 가져야 함으로 一般教師보다 더 높은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도 司書教師로 任用되면 一般教師보다도 下位格인 特殊系列에 속하게 되어 1, 2 級 正教師나 校監, 校長으로 昇進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問題點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資格은 規定하였지만 司書教師養成에 있어서 履修科目과 學點등에 관한 措置가 講究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이는 司書教師의 養成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2) 司書教師의 配置

圖書館法 6 條 (司書職員의 配置) 1 項을 보면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關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關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⁴¹⁾고 規定하였고 同法 第 26 條(職員)에는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

39) 教員資格檢定令(1978. 12. 30全文改正, 1983. 6. 9改正), 第 20 條.

40) 教員資格檢定令施行規則(1982. 6. 23 全文改正, 1983. 10. 5改正), 第 12 條 第 13 條.

41) 圖書館法 第 6 條, 司書職員의 配置.

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⁴²⁾ 고 司書教師의 配置를 義務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施行令 第 6 條 1 項에

1. 國民學校에는 1人 以上의 司書教師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 以下인 때에는 1人의 司書教師나 1人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超過할 때에는 2人の 司書教師나 2人の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⁴³⁾ 고 그 配置數字를 明示하고 있다.

이 規定에 따랐음인지 文敎部는 한 때 (1968年) ① 建坪 50坪 以上, ② 閱覽席 100席 以上, ③ 藏書 3,000卷 以上, ④ 學生 1,200名 以上的 高等學校를 基準으로 하여 33名의 司書教師를 配置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후로는 配置를 中斷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있는 法 조차 거의 지켜지지 않은 實情이니 이보다 나은 方向으로의 法改正은 必不可少한 일이라 하겠다. 안타까운 現實이다.

3. 司書教師의 養成

學敎圖書館이 많은 量의 藏書를 確保하고 財政이 豐富하고 施設이 아 무리 좋다해도 그 모든 것을 運用하는 司書教師가 配置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配置되어 있다 하더라도 教師로서의 資質이 不足하고 圖書館業務를 管掌하는데 必要한 專門的인 知識이 缺如되어 있다면 圖書館

42) 圖書館法 第 26 條, 職員.

43) 圖書館法 施行令, 第 6 條 1 項.

은 學校에 있어서 중요한 教育的 機能을 다할 수 없을 뿐더러 利用되지 않는 죽은 圖書館으로 轉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또한 司書教師의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1) 現在의 司書教師 養成制度

圖書館法 第 6 條 (司書職員의 配置) 2 項에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闈令으로 定한다.”⁴⁴⁾ 고 規定하였으나 막상 그 施行令에는 資格에 대한 規定은 나와 있어도 養成에 대한 規定은 나와있지 않다. 이와같이 資格은 規定하였지만 養成에 있어서 履修 科目이나 學點등에 關한 措置가 講究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體系的인 教育이 되지 못하고 資格基準에만 依據한 司書教師를 養成하여온 느낌이다.

前項에서 言及하였듯이 司書教師가 될 수 있는 길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의 司書教師는 주로 1,2 項에 依據 一般大學의 圖書館 學科와 一般教師들을 통한 資格講習을 통해서 養成되었다.

첫째, 一般大學에서 司書教師를 養成하는 경우는 “大學卒業者로써 在學中 圖書館學을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過程을 履修한 者”로 되어 있으나 圖書館學에 대한 科目이 中等學校의 教科目으로 採擇되어 있지 않은 지금 教師資格證을 所持하고 있으나 實제적으로 教師로서의 역활은 不可能하다는데 問題가 있다. 그러므로 一般大學에서 司書教師를 養成하는 경우는 “正司書教師가 되는 大學圖書館學科의 Curriculum은 受講者가 그 全過程에서 副專攻을 認定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로 인하여 司書教師資格證은 獲得하였으나 가르칠 科目이 없는 教師 아닌 教師를 排出하고 있다. 고로 學敎圖書館에서의 就業은 實在로 不可能한 實情에 놓여있고 大學에서 正規過程의 司書教師養成이 坐礁되어 있는 것

44) 圖書館法 第 6 條, 司書職員의 配置.

이다.”⁴⁵⁾

司書教師는 보통 一般教師와 같이 學科目을 받아 볼과 동시에 圖書館業務도 兼任하는 教師를 指稱하여 司書는 圖書館學을 專攻한 사람으로서 圖書館業務를 專擔하며 學校의 一般敎科目을 맞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規模가 큰 學校에서는 이러한 專任司書가 必要하다고 볼때 한때의 미得教師는 말만의 司書教師이지 사실은 學敎司書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授業도 擔當하지 않을 뿐더러 教師의 役割보다는 司書의 役割을 주로 하는데 무엇으로 學校司書와 區別할 수 있으며 資格證만 所持하고 있다고 해서 어찌 教師가 될 수 있겠는가?

둘째는 準教師 以上의 資格證所持者로써 所定의 司書養成講習을 받은者が 司書教師로 進出하는 경우인데 이경우 教師로서의 役割과 司書로서의 役割을 兼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圖書館法施行規則에서 正司書, 準司書의 資格講習에 관한 事項반을 規定하고 司書教師養成에 있어서 複修科目과 學點등에 관한措置가 講究되어 있지 않아 一貫性있고 體系的인 教育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司書教師資格研修를 원하는 教師들이 진실로 司書教師가 되고자 하는 目的意識이 있는것이 아니라 昇進을 위한 加算點을 獲得한다거나 하는 다른 目的으로 資格研修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教師들이 資格研修를 받았지만 圖書館은 여전히 外面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狀況이 되풀이 되는 한 學校圖書館의 發展은 期約하기 어려울 것이다.

2) 改善點

教師는 專門職이다. 그중에서도 司書教師는 더욱 專門職이다. 學校圖書館이 從來의 文獻資料爲主에서 多媒體資料로 擴大됨에 따라 그 機能의 轉換내지는 極大化를 切實히 要求하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며 그것이 또한 學校圖書館의 死活이 걸린 問題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센터로의 變

45) 金孝貞等, “韓國의 圖書館發展을 위한 國家政策에 關한 研究”, op. cit., p.108.

身을 前提로 할때 從來와 같이 文獻資料만을 所藏하고 運營하는 學敎圖書館에도 專門的인 理論과 知識을 가진 司書教師를 必要로 하였는데 하물며 文獻資料以外의 모든 媒體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利用者에게 奉仕하는 學校圖書館미디어 센터를 담당하는 司書教師는 文獻資料는 물론 媒體資料의 理論, 製作, 利用指導등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의 習得은 必須의인 것이다.

또한 中·高等學校의 教師와 學生들을 對象으로 하는 만큼 司書教師는 一般教師와 마찬가지로 教師로서의 資格과 資質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文獻資料와 媒體資料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과 實技를 習得한 專門司書로서의 資格과 資質을 具備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資質을 具備한 司書教師는 뚜렷한 使命과 目的아래 制度의 으로 養成해야 만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現時點에서 볼때 가장 重要하고도 根本의인 問題는 비록 視聽覺機具가 不足하기는 하지만 이를 教育課程 遂行이나 教育計劃에 直接利用할 수 있는 專門職司書教師가 配置되어 있지 않아서 있는 資料조차도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현재 中·高等學校에 있어서 視聽覺敎具를 담당하는 教師는 學校에 따라 각기 다르고 또 이러한 媒體資料에 대한 어느 程度의 專門의인 知識을 가진 教師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大部分의 경우는 단지 機具의 操作法만을 알고 使用하는데 그치고 만다. 極端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資料들을 使用하는 方法 또는 그 必要性을充分히 理解하지 못하여 死藏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媒體資料를 가장 效果的으로 또 能率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專擔教師를 配置해야 한다.⁴⁶⁾

이러한 現實을 考慮할 때 가장 시급하고 重要한 問題는 모든 教育媒體資料의 統合運營과 그에 따른 專門職司書教師의 養成인 것이다.

46)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s 化를 위한 研究”, op. cit. p.77.

이러한 多樣한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專門職 司書教師의 養成은 師範大學에서 담당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왜나하면 教科課程上 一般大學은 司書教師養成이 主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對處할 수 있도록 教育課程을 改編하기란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反面에 師範大學의 圖書館教育科는 오로지 司書教師養成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特色있는 教育課程을 運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一般大學의 圖書館學科에서 司書教師資格證을 부여할 경우 教職科目 16 學點의 取得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學敎圖書館을 志望하는 學生들만을 위해서라도 미디어 센터를 運營할 수 있는 能力を 갖출 수 있도록 媒體資料의 理論, 製作, 利用등에 대한 教科목을 選擇科目으로 대폭 개설하고 讀書指導 및 學敎圖書館運營등에 대한 教科목도 적절히 개설하여 變化하고 있는 學校圖書館業務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能력을 具備시킨 다음에 資格을 認定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現職教師들을 對象으로 실시하는 短期資格研修는 현재 實效性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지 하든지 부득이하다면 國家的인 次元에서 履修科目이나 學點등에 대한 規定을 明示하고 統一된 教科課程을 만들어 體系的인 教育을 實施한 다음 그들이 一定期間만이라도 責任時間을 줄여 司書教師로서의 在職을 義務化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現職司書教師에 대해서는 一般研修로써 媒體資料의 理論, 製作, 利用등에 대한 教科목과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法에 대한 教育을 實施하여 變化하는 學校圖書館業務에 對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結論

社會의 모든 制度를 考察해 볼때 어떤 制度를 막론하고 그 制度에 대한 必要性에 根據를 두고있고 그 必要性이 切實할 때 그 制度는 더욱

더發展되고 그必要성이 弱化될 때 그制度는 沈滯내지는 退步한다는 것은 周知의事實이다. 學校圖書館이 必要性에 立脚해서 設置되었다고는 하지만 現實을 볼 때, 學校圖書館이 그機能을 제대로 進行하고 있으며 司書教師는 그 맡은바의 役割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懷疑的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아무리 學校圖書館의 重要性을 論하고 司書教師의 法的地位向上을 力說한다 해도 큰 反響을 불러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圖書館界나 一線 學校의 司書教師가 學校圖書館이 必要하고 重要하다고 主張하고 力說함으로써 그 重要性을 認定받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一般教師나 學生, 教育行政家들이 學校圖書館의 重要함과 必要性을 느낄때 學校圖書館은 自學 自習과 創意力伸張을 위한 教育文化센터로써 發展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1968 年度에 全國高等學校 教師 T/O에 司書教師를 33名이나 划지만 그 후에 더 이상 T/O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現在 33名의 T/O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現狀은 一線學校 圖書館이 司書教師의 必要性을 긴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事實도 된다. 이런 現狀은 中學校도 마찬가지이다. 서율의 경우 平準化作業으로 약간의 條件과 더불어 校長이 원하면 T/O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 實은 全中學校에 司書教師가 配置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T/O를 받은 學校에서도 圖書館과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런 狀態를 司書教師들의 進路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것에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다시 말하면 學校圖書館 運動方向과 司書教師의 活動能力에도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學校圖書館의 運動方向이 學校教育課程과 密接한 關係가 있게되면 다소라도 解決되리라 보며 이런것에 관한 研究를 司書教師諸

47) 金容喆, “學校圖書館의 Media Center 化를 위한 研究”, 1985 年 韓國圖書館學會發展資料, p.1.

位께서 많이 해야 되겠다”⁴⁸⁾는 徐章錫氏의 말은 10年이 지난 오늘에도 새삼 吟味해 볼 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金南碩, 金正昭 兩教授에 따르면⁴⁹⁾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으로써 “學校長의 認識不足 및 學校關係政策當局者의 學校圖書館을 위한 政策不在 그리고 經濟的事情 등을 들고 있다. 그 具體的 인例를 들면 첫째 調查對象 學校長이 在職하고 있는 學校圖書館의 役割樣相을 ‘教育의 中心場’ (8%) 이라기 보다는 ‘읽을거리의 提供’ (37.6%)과 ‘學習의 補助機關’ (36.67%) 이 大部分을 차지하며 ‘圖書保管所’ 도 14%나 차지하고 심지어는 ‘入試를 위한 工夫房’ (3.73%)이라는 認識까지도 一極小數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現住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司書教師의 配置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學校長들의 大部分 (68.64%) 이 教科目授業을 兼하는 兼任의 司書教師를 願하고 있고 專任事務職을 願하는 數字 (16.02%) 가 오히려 專任司書教師를 願하는 數字 (9.9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 學校長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司書教師의 位置가 어떤지를 키이 알 수 있겠다.

學教圖書館을 設置해야 하는 것은 비록 圖書館法에 義務條項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 法이 제대로 遵守되고 있지 않음이 現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實情下에서는 學校의 最高經營者인 學校長의 絶對的인 理解와 積極的인 後援없이는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期約하기 어렵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을 設置하고 育成시키는 것은 學校長의 裁量權에 속한다. 하지만 學校長으로 하여금 圖書館에 대한 關心을 갖도록 하는 것은 司書教師의 할 일이다.

48) 徐章錫, “學校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圖協月報, v.15. n.12. p.10.

49) 金南碩, 金正昭, “學校圖書館發展의 沮害要因에 關한 實證的 考察”, 圖書館學論集, 第7輯, 韓國圖書館情報學會, 1980. pp.24-42.

法規自體에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지만 法規대로 하고 있지도 못한 것이 學校圖書館의 現實이다. 따라서 行政的인 뒷받침도 시급하지만 自體의 運營이 새 方向을 찾아야 하겠다.

本稿는 이러한 觀點에서 學校圖書館을 活性化시키고 司書教師의 地位向上을 위한 몇가지 方案을 그 必要性認識의 次元에서 檢討해 보았다. 그 内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學校圖書館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方案으로는 그 機能의 轉換내지는 極大化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機能의 極大化方案으로는 첫째 Media Center로의 轉換과 둘째 教育課程과의 連繫, 세째 讀書教育의 強化, 넷째 圖書館利用指導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司書教師에 대한 諸問題로써 司書教師의 定義를 다시 생각해 보았고 司書教師에 대한 法的問題와 司書教師의 養成方案 등을 생각해 보았다.

司書教師는 그 概念自體가 教師로서의 司書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授業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固有科目을 같도록 하는것이 가장理想的이겠으나 당장 實現性이 없다면, 讀書指導 및 圖書利用法을 固有科目으로 追究하면서 次善策으로 副專攻問題도 慎重히 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司書教師의 養成은 正規師範大學에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一般大學에서 원할 경우 選擇科目的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現實을 볼때 司書教師에 대한 制度의 뒷받침이 不足하기 때문에 有能한 司書教師가 學校圖書館을 外面하고, 有能한 司書教師가 學校圖書館을 外面하기 때문에 學校圖書館이 沈滯될 수 밖에 없는 惡循環을 거듭해 왔다.

그러므로 實現性이 稀薄한 要求를 계속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現制度下에서 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고 實現可能한것 부터

漸次 解決해 나가며 學校長이나 教育行政家들에게 啓發 없이 圖書館의 必要性을 認識시켜 그들이 진실로 必要性을 切感하고 專門職司書教師들이 漸次排出되어 그 所任을 다하게 될 때 學校圖書館의 活性化는 물론 司書教師의 地位向上도 함께 圖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eacher-Librarian

by Choon Tack Lee*

Many educators and teacher-librarians have emphasized many times on the necessity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school library. But actually the necessity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school library is not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ones in the educational system.

Therefore I tried to find out several ways o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library and the promotion of the teacher-librarian focusing o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chool library.

In order to develop the school library, it is necessary that the function of the school library should be maximized and transformed to effective system.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methods : 1) Transform the present school library into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2) Connect the running system S.L.M.C. to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3) Emphasis of the reading education. 4) Guidance on the use of library.

At last I studied on the definition, the legal status and the education of the teacher-librarian.

*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Library and Information Education Dept. Full time lecturer, Choon Tack Lee.